

kiri Weekly

2015.1.5 제315호

포커스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글로벌 이슈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과 추세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와 최신 동향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보험을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관련 보험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잠재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최근 10년간 정보유출 사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표 1〉 참조).
 - 특히 올해 1월에는 카드 3사가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사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의해 내부 정보를 유출 당했음.¹⁾

1) 조선비즈(2015. 1. 2), “한수원, 2년전에도 '보안 구멍' 감사원 지적받았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3/201412230059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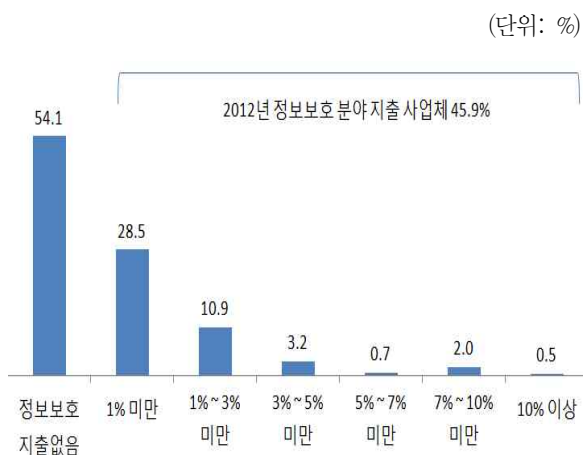
-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5,000개 네트워크 구축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20.8% 정도만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한 해 동안 기업들 중 45.9%만이 정보화 예산의 일부를 정보보호에 투자하였고 정보보호 지출이 없었던 경우의 46.5%는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7.2%는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2001년 이후 국내 주요 정보유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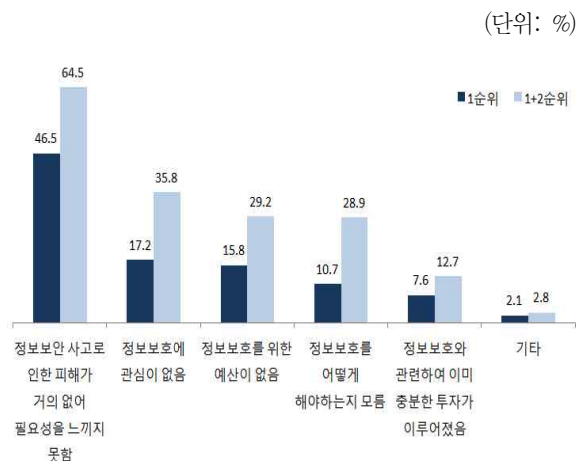
년도	사고사례	정보유출 규모
2001년	SK텔레콤	관리소홀로 휴대전화 가입자 신상정보유출
2002년	하나로통신	e메일 입력 실수로 3,000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 유출
2007년	KT하나로텔레콤	고객 7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탁업체 등에 유출
2008년	옥션	해킹으로 고객 1,081만 명 개인정보유출
2008년	GS칼텍스	고객 1,119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용 디스크 유출
2009년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200만 명 정보유출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고객 42만 명 정보유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201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2012년	KT	고객 870만 명 정보유출
2012년	진학정보사이트	고교 3학년생 68만 명 정보유출
2014년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1억 580만 건 신용정보유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및 부품 설계도 등 내부분건 유출

자료: 박영준(2012),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그림 1〉 정보보호 관련 지출



〈그림 2〉 정보보호 관련 지출이 없는 이유



주: 〈그림 2〉는 정보보호 관련 지출이 없는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복수응답 인정.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기업부문-』.

- 정보유출 사건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495만 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2,882명의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해자 전부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총 손해배상액은 6조 9,900억 원에 이릅니다.²⁾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처리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자산예탁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됨.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
 - 그러나 사업자 과실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이 파산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래서 특정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자산예탁을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됨(〈표 2〉 참조).

〈표 2〉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법률개정안 요약

법률	개정안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함	제75조: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함	제52조: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함	제76조: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주: 개정안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음.
 자료: <http://www.parkdaedong.kr/ddc/?r=home&c=3/15> 참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1가합11733 등 판결.

■ 현재 은행, 증권, 카드, 보험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으나 위 제도개선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위 제도개선으로 적용으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수는 최대 820만(개인정보보호법(380만), 신용정보법(7만), 정보통신망법(433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됨.

〈표 3〉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법명	분야	적용대상	대상 수	관할청
개인정보보호법	총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380만	행정자치부
신용정보법	금융·신용분야	신용정보회사 등	7만	금융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33만(273만 사업자 + 160만 스마트폰 앱 개발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주: 적용대상의 중복 및 범위 미확정으로 실제 가입자 수는 820만 보다 적을 수 있음. 일본은 '개인정보처리자'를 5천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자료: 박영준(2012),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 손해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비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³⁾이 주요수요자인 금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향후 비금융권 기업들과 중소기업자들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을 벤치마크하여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사이버 리스크 관리 교육, 사이버 사고 대응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⁴⁾
 - 알리안츠는 표준(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프리미엄(휴지⁵⁾ 담보 포함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자체 사이버 리스크 평가 컨설팅, 플러스(기업 맞춤형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이버 리스크 평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Cyber Protect라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AIG는 사고 예방 서비스(지식 공유, 교육 프로그램, 정보유출 리스크 평가, 관리 컨설팅), 포괄적인 담보를 포함하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사고관리 서비스(24시간 사고 관리 지원팀 대

3)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배상책임보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4) 최창희·김혜란(2014),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의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참조.

5) 休止, Business Interruption.

기, 법률 지원, 휴업 복구비용 지급, 대중매체 관리) 등을 포함하는 Cyber Edge라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솔루션을 제공함.

- 재보험회사들은 원수보험회사의 사이버 리스크 평가 역량을 고려하여 요율을 제공하므로 손해보험 회사들은 사이버 리스크 평가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손해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련 역량 강화와 정보유출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임. [kiri](#)